어민교실

어선에 관한 세무행정(Ⅷ)

——수인(數人)이 공동으로 어선을 구입하여 수산업을 경영하는 경우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수협중앙회 기획실
차 장 고 석 환

1. 공동사업의 의의

□ 수산업을 경영함에는 그 경영의 규모가 크던 적던간에 그 나름대로의 형편에 따라 여러사람이 함께 사업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사람이 함께 사업하는 방법으로는 법인격을 갖추어 사업하는 경우와 개인 공동사업체로서 사업하는 경우로 대별되겠는데 연근해수산업의 경우에는 어선 한두척을 사업시설로 하여 여러 사람이 동업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비교적 적고 친척 교우 등,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동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후자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여러사람이 동업하는 것은 경영자금의 부족을 해결하고 수산업경영기술을 보충하는 등 경영상의 잇점과 함께 세제상의 잇점도 있읍니다. 마음맞는 몇 사람이 출자하여 어선 한 두척을 건조한 후 수산업을 함께 경영할 때에는 소득세법상 특별규정을 두고 있어 과세소득결정, 세액결정 등에 있어 여러가지 특례를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어민들은 시설자금부족 등 사유로 여러사람이 합심하여 어선을 건조하고 수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면서도 세법에 대한 인식부족과 수행능력의 미숙으로 인하여 한사람 명의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법에서 규정한 특례적용을 못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56조 제2항에서는 사업소득(수산업소득을 포함함)이 있는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각각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여기서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한다」 함은 공동사업자가 민법상 조합계약(組合契約 : 민법 제703조)를 맺고 그 계약에 기조하여 상호 출자한 후 공동사업을 경영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자인 당사자가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구성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결정하며,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민법 제711조에 규정하고 있읍니다.

2. 공동사업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의 특례

(1) 사업자 등록신청의 특징

두사람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수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어선의 선적항이 있는 곳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일반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의 유의사항은 물론 다음 열거한 사항도 빠짐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공동사업자 상호간의 지분율 및 손익에 대한 배분비율. 이때 공동사업자 상호간에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읍니다.

○대표공동사업자의 선정(대표공동사업자란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할 때 동 출자한 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자가 대표공동사업자로 됩니다. 그러나 출자금액이 많은 사람이 1인이 아

니고 2인 이상임으로서 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공동사업에는 공동사업자들이 선임한 사실상의 대표공동사업자 1인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등록신청서의 명의자

2인이상의 사업자가 수산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공동사업자로 하여 「대표자 이외 몇명」의 명의로 신청하되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를 1사업자로 보고 납세번호를 따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장의 신고

대표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장등 이동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장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동 신고를 접수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공동사업장등 이동통보서」를 대표공동사업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2) 장부 비치 기장의무의 특징

소득세법 제132조의 2 제 3 항에서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비치 기장하여야 할 장부에 관하여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즉 수인이 공동으로 수산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동 공동사업장에는 개개인의 지분율이나 손익배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하나로 묶어서 1명의 사업자로 보고 기장의무를 지운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공동사업자 甲·乙·丙·丁 4인의 '82년간 총 수입금액 (즉 년간 수산물 총판매금액(지분율은 35%, 30%, 25%, 10%)이 3억원이더라도 개별지분율에 의하면 甲은 9,500만원, 乙은 9,000만원, 丙은 7,500만원, 丁은 3,000만원으로서 이들은 다음 기장의무 구분에 따라 개인별로는 모두 1억원 미만임으로 일기장 의무자에 해당되겠지만 세법에서는 이들 모두를 합계한 3억원이 2억 5천만원을 넘치는 것이므로 이때의 공동사업장은 개인 갑·을·병·정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수인이 어선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의 기장의무 내용을 설명하면

○공동사업에 의하여 당해년도(예 : '83년)의 직 전년도(예 : '82년)에 어획한 수산물의 판매실적이 2억 5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고

○직 전년도에 공동사업에 의한 어획실적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장부 의무자가 되며

○복식부기 의무자나 간이장부 의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기장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공동으로 수산업은 경영하는 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계없이 따로 단독사업(수산업뿐만이 아닌 다른 사업을 포함함)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위 기장의무의 구분에 있어 공동사업장은 별개의 것으로 보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만의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기장의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3) 총 수입금액의 신고 및 결정의 특례

○대표공동사업자의 총 수입금액 신고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년도(예 83년)의 다음년도(예 84년) 1월 25일까지 공동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총 수입금액, 즉 연간 어획한 수산물의 판매실적을 신고하여야 한다.

○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

사업장 관할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2월말까지 사업장별 종목별로 총수입금액을 조사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대표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불구하고 당해년도의 직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 그 총수입금액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때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는 때에는 신고 없다는 사실도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소득금액의 조사 결정의 특례

○공동사업장별 소득금액의 조사결정

2인이상의 사업자가 수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장소를 「공동사업장」이라 하고 당해 공동사업자중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를 「대표공동사업자」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 있읍니다. 정부는 이처럼 사업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며 이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독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자」별로 하나의 과세 단위를 결정하는 원칙과 크게 다른 것입니다.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세무서장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산업소득금액(년간 수산물판매금액-필요경비)의 조사·결정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독사업의 경우 당해사업자별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하는 것과 다른 제도입니다. 그러나 소득금액의 조사결정도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처럼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이를 행하며,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관할지역외에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그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읍니다.

○소관세무서장간의 세무자료등의 통보

공동사업장별 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각 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 서식에 의한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결정상황표」 즉 세무자료를 작성하여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인이 동업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한 과세소득을 동업자 각인의 몫으로 나누어 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공동사업자 각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토록 하자는 목적에서 입니다. 이때 통보하는 세무자료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련된 다음 열거한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당한 세액 기타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결정에 필요한 자료 일체도 첨부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과세사업자로 보아 동 공동사업장이 간이장부 의무자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기는 하였으나 공동사업에 관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이 불성실한 경우의 기장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121조 제4항)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이 세법상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임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보고불성실가산세(소득세법 제121조 제6항 및 제7항)

○부동산 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동 계약서 부본의 정부제출을 불성실하게 한 경우의 계약서부본제출 불성실가산세(소득세법 제121조 제8항)

○원천징수납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182조)

위 가산세액과 원천징수된 세액은 세무자료 통보시 공동사업자 개개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하여 공동사업자 각인의 주소지세무서에 통보하는 것이며, 이 통보를 받은 주소지 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자 각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가산세액도 함께 보태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자중에 가족등이 있는 경우의 소득금액 합산의 특례

어선을 수인이 소유하고 수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 동 어선소유자중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의 자산소득합산과 전혀 다른 소득금액 간주 합산 과세제도가 있읍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범위로는

◇ 배우자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무리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종합소득이라 하더라도 자산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만을 합산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은 소득자 개개인의 자기소득만을 합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라 하더라도 합산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자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합산방법은 공동사업에 있어 그 구성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간주주의) 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합산과세는 소득세 누진과세의 회피등을

방지한다는 점을 강조한 나머지 소득세법 제 7 조의 규정에서 천명한 실질과세원칙을 벗어난 하나의 특칙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공동사업장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및 감가상각방법의 신고에 관한 특례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에 관한 특례

수산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품이라 할 수산물이 다른 상품과 달리 부패성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 수산물은 생산하자마자 즉시 판매하여야 하므로 사업년도 종료인 현재 재고자산이랄게 별로 없겠으나 여하튼 사업자임으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가 정부에 신고한 방법대로 평가하여야 하는바, 동 평가방법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세무서에 마쳐야하고, 이미 신고한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년도의 직 전년도 말일까지 다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고하는 장소는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입니다. 그러나 수인이 1척의 어선을 소유한 후 공동으로 사업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각인의 주소지세무서에 일일이 신고할 수도 없고 또 신고해봐야 별로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이때에는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만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정자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에 관한 특례

수산업을 경영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어선, 어구, 어망등 장비가 있어야 하겠읍니다. 이들 장비와 기타 자산등 세법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감모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과세소득금액의 계산상 필요경비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지극히 중요하게 다루는 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도 재고자산 평가방법과 같이 정부에 신고한 대로 하여야 합니다. 감가상각방법은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기일은 신규로 사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자산을 새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신고의 특례에서처럼 공동사업자 각인의 주소지에 일일이 신고할 필요없이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신고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한번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은 쉽게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가상각방법을 달리하는 사업자 즉 어선의 감가상각방법을 한사람은 정율법에 의하여, 다른 한사람은 정액법에 의하는 경우 이들이 공동사업을 경영하게 된 때에는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신고를 하고 동 변경신고에 대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변경된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할수 있읍니다.

(6) 공동사업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범위

수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수산업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등이 출자한 비율에 의하여 그들이 결정한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사업자별로 종합소득세의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당해 동업자 각각이 자기 소득분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라 하더라도 그에서 발생한 소득을 공동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그들의 조세채무가 연대관계에 있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사업자는 소득세에 관해서는 개별적으로 조세채무를 부담하나 그외의 국세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와 같이 사업자 1인과 그와 친척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되어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가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까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① 배우자 ②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③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를 말하나 공동사업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친족은 위 ①내지 ③에 속하더라도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공동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해 년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7) 공동사업자 각인의 종합소득과세 표준확정신고의 특례

공동사업자가 5월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이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동업자의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동업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표공동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별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8) 소득세 누진세율적용의 완화

소득세는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가족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바, 현행소득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이어서 소득금액이 많으면 과세표준이 커지고 그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세율도 점차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소득세율은 현재 최하 6%(과세표준 180만원 이하) 최고 55%(과세표준 6천만원 초과)의 16단계로 나누어졌읍니다. 그러므로 같은 2천만원의 과세표준이라 하더라도 단독사업의 경우에는 3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4인정도의 공동사업일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개개인의 평균과세표준이 $\frac{2천만원}{4}$ 즉 500만원으로서 그때에는 1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으므로 4인의 세액을 모두 합쳐볼 때에는 단독사업의 경우보다 엄청나게 줄어든 소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사례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표와 같습니다. 즉, 4인이 안강망어업을 공동사업하는 경우의 세부담 합계는 2,026,433원이지만 단독명의에 의한 세부담 합계는 7,256,790원으로서 그 차액 5,230,357원이 절세되는 셈입니다.

사례

83년중 안강망어업 총 수입금액이 3억원으로서 소득금액이 19,800,000원일때 공동사업일 경우와 단독사업일 경우의 세부담의 비교

구 분		4 인 공 동 사 업 의 경 우					단독명의의 경우
공동사업자 성명		대표 공동사업자 甲	乙	丙	丁	계	
손익분배비율		35%	30%	25%	10%	100%	—
과세소득금액		6,930,000	5,940,000	4,950,000	1,980,000	19,800,000	19,800,000
소득금액(5인가족)		1,440,000	1,440,000	1,440,000	1,440,000	5,760,000	5,760,000
과세표준		5,490,000	4,500,000	3,510,000	540,000	14,040,000	18,360,000
기본세율		42만원+4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좌 동	26만 4천원+350만원 초과금액의 12%	6%	—	278만 1천원+1천 5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1%
산출세액		823,500	540,000	421,200	32,400	1,817,100	5,691,600
사업소득세액공제		(5%) 41,175	(5%) 27,000	(5%) 21,060	(10%) 3,240	92,475	—
납부할세액	소득세	782,325	513,000	400,140	29,160	1,724,625	5,691,600
	방위세	78,232	51,300	40,014	2,916	172,462	1,138,320
	주민세	58,674	38,475	30,010	2,187	129,346	426,870
	계	919,231	602,775	470,164	34,263	2,026,433	7,256,790
차 액							5,230,357